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I·SEOUL·U
국제도시의 사랑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스쿨버스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0(202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5주 연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스쿨버스 계약 사업체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행정안전부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특례를 활용하시어 계약 사업체의 선금지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가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10억원 미만 공사계약,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용역 계약은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허용
-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

서울시 교육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0(2020.2.26.) 공문
2.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을 위한 특례 및 집행요령,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 서울효제초등학교장, 서울봉래초등학교장, 서울덕수초등학교장, 서울남정초등학교장, 서울용산초등학교장, 서울한강초등학교장, 서울청파초등학교장, 서울옥수초등학교장, 서울행당초등학교장, 서울경동초등학교장, 서울사근초등학교장, 서울광장초등학교장, 서울연북초등학교장, 서울상봉초등학교장, 서울원목초등학교장, 서울망우초등학교장, 서울청덕초등학교장, 서울정수초등학교장, 서울수유초등학교장, 서울도봉초등학교장, 서울신창초등학교장, 서울방학초등학교장, 서울신상계초등학교장, 서울북한산초등학교장, 서울갈현초등학교장, 서울창서초등학교장, 서울용연초등학교장, 서울북성초등학교장, 서울한서초등학교장, 서울서감초등학교장, 서울강월초등학교장, 서울송정초등학교장, 서울우장초등학교장, 서울동서초등학교장, 서울은수초등학교장, 서울오류남초등학교장, 서울오정초등학교장, 서울금천초등학교장, 서울금산초등학교장, 서울신대림초등학교장, 서울행림초등학교장, 서울한동초등학교장, 서울신우초등학교장, 서울신성초등학교장, 서울연남초등학교장, 서울양재초등학교장, 서울우암초등학교장, 서울왕복초등학교장, 서울을현초등학교장, 서울구름초등학교장, 서울문덕초등학교장, 서울신암초등학교장, 서울천동초등학교장

주무관 안영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3/25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5631 ()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3층(서소문동)
전화 02-2133-3943 /전송 02-2133-1011 / youb@seoul.go.kr / 대시민공개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비고
선금 특례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20.6.26. (신청일기준)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사용내역	(기존) 2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30%미만 선금을 지급을 한 경우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특례) 10억원 미만 공사계약,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용역 계약은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허용		
	선금 지급률	(의무지급률)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의무지급률을 각 10% 상향 (최대지급률)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		
신속 집행 요령	선금반환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선금지급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내 지급한 선금 반환 제외		1911.11 기통보
	계약심사	(통합운영) 경제성검토 및 일상감사 등 유사업무와 계약심사 통합 또는 연계 운용 (심사제외)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심사대상 제외 가능		

※ (주의사항)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확보 필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통보

1. 항상 지방계약 관련 업무수행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부에서는 자치단체 예산 집행을 제고 및 이월·불용 최소화 등 지방재정을 최대한 적기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특례를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을 시·도 및 교육청에서는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불임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재정혁신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청(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담당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장), 전자조달관리과장

전문임기제 나급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850 (2020.02.26.) 접수 예산담당관-2634 (2020.2.26.)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82 / 전송 044-204-8967 / ybchanya95@mail.go.kr / 대시민공개